



인 천 광 역 시



수신 인천지방세무사회

(경유)

제목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후 자진신고 안내 협조 요청

1. 평소 지방소득세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.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(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1 【가산세 적용의 특례】 규정 종료)에 따라, 신고기간 이후라도 조기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가산세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.
3. 아울러, 지방소득세 무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액의 50%가 감면되오니, 해당 대상자가 **7월 3일(금)까지**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

《안내 협조 요청 내용》	
○ (안내 대상)	'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,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(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중 기한 내 미납부자 포함)의 신고대리인
○ (안내 내용)	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 기한 내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 시, 가산세 감면*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1개월 이내(7.3.) 신고 협조 요청
* 감면율(기한 후 1개월 이내: 50%, 1개월~3개월 이내: 30%, 3개월~6개월 이내: 20%)	

끝.

인 천 광 역 시 장



주무관

전유진

소득소비세담당

권광혁

세정담당

대결 2026. 6. 29.

김정구

세정담당관

전결

협조자

시행 세정담당관-9120

(2026. 6. 29.)

접수

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세정담당관 (구월동)

/ <http://www.incheon.go.kr/>

전화번호 032-440-1625

팩스번호 032-440-8702

/ jijikl177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"다 함께 만들 2045 탄소중립 인천" 기후위기대응 권역별 포럼 개최(7.9.)